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5. 13.(수)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7차, 제1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19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19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카메라가 나가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이사장 이석우 씨 임명과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오늘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 보고, 또 이에 대해 위원장님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기주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잠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안건 심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기타 안건으로 논의하기는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된 다음에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워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의결안건>이 4건인데 보니까 <안건 나>와 관련해서 의견진술인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봐도 <안건 나>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 <다>, <라>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안건 나>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에 대해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방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O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다룰 어떤 안건보다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또 임원 선임과 그 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언론과 국민 여론의 관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안건을 처리하기를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위장

-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건 처리를 하고 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두 분이 그렇게 희망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지요.

O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또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고자 두 분은 <안건 가> 때문에 나와 계신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해서는 방송기반국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시지요. 최현숙 팀장님, 혹시 방송기반국장 나와 계십니까? 나와 계시네요. 그다음에 임 필교 팀장도 있습니까?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말씀하십시오.

O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이기 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김재홍 위원님과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이석우 씨를 임명한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청 자미디어재단과 센터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그분이 과거 편향적인 종편 활동가로 활동

했던 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센터의 설립 취지나 그 기능을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전에 내정설이 흘러 나오고 그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에서 보듯이 이사장 인사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위원장님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 었습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특히 누가 이석우 씨를 추천했는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석우 씨를 재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 사장 낙하산 인사 파동의 본질은 추천 주체는 잘 알 수 없으나 검증 과정 그리고 임명 과 정을 보면 청와대의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인사 개입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 령께서는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강조하시고 적폐 청산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비정상의 정 상화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인사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또 다른 적폐이고 또한 정상의 비정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이기주 위원님 께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석우 씨의 재단 이사장 임 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 임명 철회나 이석우 씨가 자진사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사실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사장 내정 사실이나 임 명식 일정마저도 몰랐던 기막힌 인사입니다. 위원들에게 내정 사실도, 임명식 일정도 통보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과 관련해서 협의 는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임추위에서 결정이 됐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 연히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명식 일정도 마찬가 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언론을 통해 임명식 일정을 확인했는데, 도대체 공식 일정 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임명식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장님과 또 필요시 추가적으로 이기주 임추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싶어 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답변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일부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셔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근거법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제 기억에 작년 5월경 제3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과관련해서 대략의 내용을 티타임을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첫째로 해야 할 일이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기재부 등 행정부처와 협의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점이 있다고 해서 저더러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설립추진위원회를 맡아서 지금까지도 그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마련하는 여러 가지 규정중 정관 부칙에 초대 임원추천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맡도록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제가 법인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인설립위원회에는 저 외에 법률전문가, 회계재무전문가 그리고 미디어 분야의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 하여 논의도 했고, 또 사무처에서 그동안 이 업무를 했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지금 재단 명칭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등기를 하려고 합 니다만 이것의 성격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현재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법적 실체가 아직 미완이 긴 하지만 등기가 된 이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 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재부와 작년부터 쭉 금년 재단의 운영예산에 대해 협의하면서도 재 단이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규정도 준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의 정관이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나 직제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 부 검토한 결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정에 맞는 그러한 규정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렇게 됨에 따라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장, 이사, 감사 선 임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텐데 금년 1월 경에 설립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 끝에 정관이나 다른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서 티타임에 보고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 공공기관에서 하 는 규정을 원용한 저희의 규정에 따라 공모도 했고 후보자들의 지원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 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임추위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나서 왜 위원들에게 통보 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저를 포함한 위 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계된 실무자 누구도 임원 추천 내지는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외부에 이야기 못 하도록 규정상 아주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임추위는 지난 4월 29일 후보 자들에 대한 면접이 끝난 날로 임무를 마치고 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 11일에 임명식이 있었는데, 면접이 끝나고 임명장 수여식 할 때까지 저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했 던 사람들은 그 행정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대략 말씀 드렸는 지 모르겠지만 일단 입장 표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시행령에 따르면 300인 미만 공기업 기관장, 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되겠지요. 여기는 주무기관의 장이, 즉 위원장님께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하셨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 정관을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그리고 위원장님 임명,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전체회의 심결 사항입니다.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취지를 폭넓게 해석하고 합의제 운영정신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결과 정도는 당연히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의 인사 문제를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와 위원장님께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또 그 운영 전체를 이렇게 끌고 가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화하고 합리화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 저도 간단히 답을 드리면, 「방통위 설치법」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인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으로 승격 확대하기 전,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심의·의결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의결하면서 부칙에 보면 법인설립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을 방통위원장님이 임명 내지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어차피 시청자미디어 재단은 공공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반규정들을 다 원용해서 규정을 먼저 마련하고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 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법을 엄격히 해석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무처와 협의해서 두 차례에 걸쳐 티타임에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관내용 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회 운영규정이나 이런 주요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다른 상임위원님들과 공유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임 원추천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방통위원장님께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준하는 이런 기관의 임원이 되려 면 나름대로 소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합의정신이나 방통위 설치법 을 아무리 크게 확대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공유하기가 곤란하겠다는 판단을 했 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두 분 위원님들만의 상호토론이 아니고 질문과 답변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안은 크게 2가지 갈래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 이석우 씨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이것이 적합하냐, 적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합의제 정신이 지켜지고 있느냐, 또는 그 산하기구 인선 과정에 절차의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석우 씨가 적합하냐 하는 것은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보탠다면, 이분이 종편 방송에서 활동할 때, 그 발언내용을 일일이 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과 국민 여론층에서 지적한, 비판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종북일 수 있다, 종북이다", 이렇게 발언했고, 그 뒤에 국무총리비서실장과 공보실장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공보실장은 그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공익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기구이

고, 앞으로 전국 5개 권역에 있는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과 디지털교육과 문화운동, 시민 단체운동을 지원하고 정책활동을 펴야 할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의 장인 이사장이 정치적 편향성,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맡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의 문제입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도 말하자면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법률에 따라 했다는 답변입니다만, 저는 「방통위 설치법」심결사항으로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재단을 설립한 후에 아직 법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조 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이 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내용이 무엇이냐, 운영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폭넓게 해석한다면 인사, 조직관리, 예산, 회계를 다 포함하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다 갖추어지지 않고 안착되지 않은 법령 아래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초대 이사장과 임원의 선출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의결기구인 상임위원단에게 일체의 사전 설명 이나 보고도 하지 않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그 정관에 따라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추천위원회, 정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가 복수로 위원장에게 추천했고 위원장이 그중에 골라서 임명한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법정기구, 저 자신이 방송평가위원장, 시청자권익 보호위원장으로 지명 위촉을 받을 때, 규정을 보니까 9명 안팎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하거나 더군 다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기구의 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전권으로 진행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방송법」말고는 어떤 법령, 규정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 합의제 운영의 입법 취지이고, 그 취지 아래에서 쌓아온 불문율 과 관행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정기구의 위원장 임명규 정을 제가 다 조사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3, 4개의 법정기구 외에도 봤는데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도 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지명하여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들과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왔습니까? 대부 분 전체회의의 <의결안건>으로 의결 처리했습니다. 최소한 사전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 런데 이번에만 어찌되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님만…, 제 기억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과 이사장을 포함한 그 임원 인선 절차에 관해 설명,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그 재 단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것은 딱 한두 번입니다. 그 재단 설립 추진위원장을 상임위원 중 에 이기주 위원으로 한다, 정부 관료 출신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 겠다고 해서 합의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관에 대해 설명, 보고를 했습니까?

○ 임필교 법인설립팀장

- 예, 1월 중에 티타임에서 보고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그래, 잘하고 있는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는 작년에 이 재단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저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습니

다. 기재부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했을 때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국회에 가서 로비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 지원도 좀 더 해 달라고 로비했습니다. 그렇게 상 임위원이 부탁 받고 동원된 것 말고는 재단 설립에 관해 사전 설명, 보고를 들은 바가 기억 에 없네요. 인선절차가 인사사항이니까 대외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인선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또 심사 과정은 제대로 됐는지, 점수는 어떻 게 주었는지, 그 결과 어떻게 복수추천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 같습 니다. 더군다나 최종 결정이 됐으면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언제 임명장을 주기로 했다고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그 임명 식에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명식을 갖는 당일 날까지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저와 고삼석 위원께서는 그 전 토요일자 언론기사를 보고 "아, 이런 것이 있는가?", "이 재단이 정말 방통위 산하기구인가?"라며 당황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과연 위원장의 임명권, 지명권, 위촉권, 상임위원과 사전협의, 동의가 법 령에 규정되지 않은, 그리고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임명을, 지명을, 위촉을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미디어재단 이사장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 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해 온 관행과 불문율과 입법취지가, 국회 미방위에서도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여러 번 공언됐고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재단의 운영방향이 지금부터 걱정됩 니다. 전국 5개 권역에 설립되어 있는 센터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그 센터들에게 연간 사업활동계획을 신청하고 기 백 만원씩 받아서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정말 다양하게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닌 말로 선거 때 집권층, 정권 쪽의 어떤 목적에 악용될, 이용될 위험성은 없는지, 이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의구심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단 본부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간부들은 정치적 중립 성, 사회·이념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힌 것입 니다. 이것은 저희와 사전협의를 안 한 것뿐만 아니고 그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근본적 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해야 하는 것이고, 차선책은 본인이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의구심이 풀리기 전 까지는 국회에 나가서 이 재단의 활동 방향, 예산 지원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할 생 각이 없습니다. 만들 때 여야 합의로 함께 협력해서, 각자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인선할 때에는 야권 위원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이사장을 그렇게 정치적 으로, 사회·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으로 앉혀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재단의 운 영방향과 존립 근거가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소시키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이 재단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홍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미디 어재단의 임원을 방통위원장님께서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방통위가 추천 내지는 의결을 해서 선임하는 기관의 임원진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KBS,

EBS, 방문진 이사들을 저희가 추천하거나 의결해서 임명하는 경우와 방통위가 운영하는 법 정위원회…, 아까 방송평가위원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위원 내지는 위원장을 위촉하는 것 들은 방송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등 법령에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어떻게 임명, 위촉 내지 는 추천하다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내지 재단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일부 규정들은 방송법 부칙에 방통위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도 하고, 또 명백히 봐서 이것은 설립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결과 공공기관이라고 했기 때문 에 임원 선임을 위한 정관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도 거기에 맞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재홍 위원님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지만 작년에 한 번, 금년 1월 초 에 한 번, 주요한 규정안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성안하고 나서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 면 임원들을 어떻게 선임한다, 이런 주요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고 방통위 산하에 KOBACO라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KOBACO 사장이나 이사, 감사 선임 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다 진행했고, 아 까 김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 습니다. 거기에 정한 소정의 절차대로 했고, 이번에도 그에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걱정하시는 것이 새로 임명된 이사장의 과거 본인의 개인적인 식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분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식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든 아니면 현 상태에서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기관의 장을 해봐서 아는데, 여러 가지 제도의 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때 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한 문제야말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 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재단의 임원 내지는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시 는 것 같아서…, 저는 법 제도적인 측면이나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실장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O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지금 그 문제는 기조실장 전결로 처리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재단 설립 허가 행위는, 제가 봤을 때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 아 닙니까? 맞지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O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 드린 정관에 들어 있는 내용이나 기타 법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구체적으로요.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제가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계획, 예산, 조직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그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그 문제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결권자가 실장님이시니까 한 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과거에 설치됐던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고, 미디어재단은 나중에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명기가 됩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에 5개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다 들어 있다니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O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사업계획, 예산 그리고 정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O 고삼석 상임위원

- 다 들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작년에, 금년도 시청자미 디어센터 예산 편성을 할 때 방통위 전체 2015년 예산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해서 기 재부로 보내고 거기에서 심의하고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예산과 사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을 포함해서 인사규정이든 직제든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방송 법 부칙에 의해 설립위원회에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 1월에 티타 임에서 주요내용들…, 이따 시간 나시면 티타임 때 보고했던 자료를 보여 드리십시오. 거기 에 보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조실장 전 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부칙에 보면 '방통위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조실장 위임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사업계획 서다, 예산이다, 정관이다 해서 특별히 심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약간 형식 요건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용의 상당 부 분은 이미 예산 절차를 통해 예산이 편성됐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5 가지가 방송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조실장 전결의 인가절차라는 것은 상당 히 형식적이고 기속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 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다 해 놓았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이제야 본격적인 시청 자미디어재단과 지역 센터들의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나 비전부터 시작해서...,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이 새로 5명 선임됐으니까 그 런 것들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심의·의결사항의 일환으로 그런 의견을 포 함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임필교 법인설립팀장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업, 예산, 조직, 인사는 KCA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면 일어나는 모든 운영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에 보고 드리게 됩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팀장님! KCA에 있다가 재단으로 이관됐는데 왜 그것이 새로운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문제제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건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재단의 인사 문제 가지고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또 규명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나 김재홍 위원님께서 이석우 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절차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든지 간에 같은 상임위원 으로서 실제로 완전히 배제되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괴감이 있 습니다. 그 절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내용, 즉 이석우 씨를 임명한 것, 자체에 대한 입장 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정관 제2조 목적을 보면 "재단은 「방송법」제90조2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등을 통해 시청 자의 권익보호와 지역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 사업을 보면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 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장애인의 방송 시청 및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 지원, 국민의 창의적 미디어활용 지원 및 미디어 창작 인력양성, 국내외 미디어분야 교육기관 및 연구기 관, 미디어센터 등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 시청자 불만처리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 관련업무, 지역방송의 발전 지원",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막강한, 많은 그 리고 미디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석우 씨가 종편에서 편향 적인 평론가로 활동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도 문제되지만…, 사실 어떤 개인이 특정 이념이 나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도 저는 자 유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영역, 사적영역에서 그 활동을 해야지, 왜 이 런 분들이 공적영역에서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을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 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총리실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 까? 제가 봤을 때 이석우 씨는 종편에 출연해서 편파적인 평론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했던 그런 분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본질적인 업무인 사회적 소통을 활성 화하고 화합하고 미디어 교육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임명 해서 안 되고, 또 본인이 고사를 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석우 씨처럼 정치적으로 사회 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을 무리해서 임명했는지, 사실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일을 해 오셨던 스타일로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 렸듯이 이번 이석우 씨 인사의 경우에는 추천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증과정에서 걸 렀어야지요. 청와대에서 검증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석우 씨 이사장님 임명할 때 청와대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류 넣었을 것 아닙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인사 검증 절차는 거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이것이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입니까? 이분이 미디어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청자 미디어 지원활동 사업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인재풀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수용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에 이석우 씨 이사장 임명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성명서들을 봤습니다. 제목 중에 보면 '낙하산 인사 강행, 방통위가 부끄럽다'이런 제목도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임명과정에 대한 그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계속 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법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석우 씨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이 문제를 아직 마무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께서는 위원장님이 평 소 굉장히 합리적인 운영방침을 계속 밝혀 왔고, 그렇게 해 오셨다고 인정하지만 이번에 상 당히 실망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간담회 논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임명권,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과 실제로 방통위 내에서 위원장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고 협 의를 거쳤던 그 관행, 불문율과의 갭이 이번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논의하고 싶습 니다. 예를 들면 아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야기를 이기주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KBS는 공공기관 이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KBS 구성원들은 그것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경영기관 방문 진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상의 공공성입니다. EBS,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BS, EBS, 방문진의 정관 개정할 때 방송법 제45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다고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재단의 정관에는 정관을 개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처음에는 간파하지 못했습 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느낌은, 이사장을 임추위가 복수 추천하면 그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한다, 거기에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거나 논의한다는 규정이 빠져 있지요. 없습니다. 정관을 그때 다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넘어간 이유는, 아마 위원장이 어떤 직무를 행 사할 때 상임위원들과 다 협의해서 하니까 이사장을 임명할 때나 정관 변경허가를 할 때 당연히 상임위원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지요. 제가 너무 순진한 것입니까? 그 것이 방통위의 합의제 입법취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간 것입 니다. '정상적으로 잘하겠지!'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께서는 "이것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한다는 규정이 없고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단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위원장님 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아닌 말로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 위원장이 그것을 회피한다고 할까, 그것을 면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들과 이것은 논의해야 한다, 합의해야 한다고, 말하자면 외부의 간섭과 개입, 낙하산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고 방통위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더군다나 임추위에서 이번에 2배수입니까, 3배수입니까?

○ 임필교 법인설립팀장

- 3배수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3배수를 위원장께 추천했는데 이사장 후보 3배수 중에 과연 이석우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바로 외부 어디에서 오더가 내려 와서 낙하산으로 내리꽂아서 거부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정말 상임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해명하시고 차후 재발

방지책도 분명히 마련하고, 이번에 허점이 있는 이 재단의 정관과 관련 법령들을 한데 모아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 말씀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말씀 드리면 제가 다른 법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한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예를 들면 방송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

○ 최성준 위원장

- 예, 위원이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에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다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서는 상임위원님들께 "혹시 추천하실 위원이 있는지"라는 의견은 제가 드린 적이 있지만 그 전체에 대해 내놓고 위원회에서 또는 간담회에서 상의를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번의 경우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관 내용에 대해 다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정관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틀림없이 임명하기 전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 나 그 이전 KOBACO의 경우에도 제가 사장을 그냥 임명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 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다면 의견을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저로서는 법 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결정하 는 것이고, 또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가 임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명식 일자와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기주 위원이 3배 수를 추천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그 세 분 중에 이석우 이사장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선정한 다음에 인사검증을 하고 나서, 그 인사검증 결과가 온 것이 7일 오후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6일부터 해외출장 중이어서 저도 그 내용을 해외에서 우선 간 략하게 내용만 들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귀국을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 다. 물론 이후에 임명장 수여식 일자는 5월 11일 오후로 제가 해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귀국을 해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위원님들께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아시고 이의를 제 기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

더라도, 8일이라도 특별히 지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임명장 수여식을 위원님들에게 고지하지 도 않고 비밀리에 몰래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추천됐고 그분이 점수가 어떻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주 위원 도 말씀하셨듯이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릴 수 도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있는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인사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각호를 보면 그와 같은 인사 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명확하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가 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시청자미 디어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출 범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 5개 또 앞으로 2개 더 늘어나는 것을 통할해서 어떻게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배수로 추천받은 세 분 중에서는 이석우 이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 기자생활, 또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한 경험, 행정 공무원을 한 경험 등을 비추어볼 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임 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편향적인 발언을 했 다는 보도를 물론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 자체가 원래 정치적 인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미디어재 단에 그런 업무가 거의 없지만, 이석우 이사장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성향으로 인해 시청 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것은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기재 부의 공공기관 평가, 감사원의 감사 등을 거쳐 당연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그밖에 우 리 방송통신위원회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논의를 해서 그것을 바로 시정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획으로는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설립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우리 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 영해 나고자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송평가위원회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나 법정기구의 위원들은 분명히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위원장은 9명 안팎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라는 규정이 없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지명할 때 방통위원장께서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김재홍 위원님이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김재홍 위원님이지 않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위원장을 지명할 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김재홍 위원님에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의결은 안 했지 않습니까?

O 김재홍 상임위위

- 여기에서 의결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11개 법정기구의 위원과 위원장은 위원을 지명할 때 상임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을 전체회의의 의결안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사자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조실장님, 그 의결을 전에 했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조사해 보십시오.

O 최성준 위원장

- 의안조정팀장님!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조사해서 정리해 왔는데, 분명히 위원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과 위원을 다 포함해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맡을 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저와 협의해서했습니다. 이 법규, 법령이라는 것이, 물론 법체계가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그 특수성이나 법령 제정 당시 상황에 따라 그 법정내용이 약간 달리조문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의합의제 운영 입법취지, 이것은「방통위 설치법」과 함께 국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확인된내용입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공익성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상임위원들의동의를 받아서 지명한다, 임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협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계속 토론해서 합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위원장께서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선의에 따라 의견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흔히 여러 번 이야기해 온 제1기, 제2기 때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것은 관행이고 불문율입니다. 사무처에 오래 있었던 분들에게 다 물어보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정체성, 합의제 행정기구의 생명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석우 씨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견을 갖습니다. 더 이상 길게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서 다양한 출신, 추천 배경을 가진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혼자서 "아, 이 정도면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좋고 적임자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의했으면 아마 이견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KOBACO 예를 들었습니다. KOBACO와 재단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KOBACO는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총회에서 형식적이지만 이사를 선임하고 그 주주총회의 대주주가 정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주주로서 기재부가 지명한 것을 형식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은 어떻습니까?

O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 논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도 아주 할 말은 많은데….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논의는, 토론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재단의 성격입니다.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제대로 운영한다면 정치적 성격이 아니지요.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우려하게 만든 것이 이번 인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회 이 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던 분을 거기에 앉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 성격임을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운영방향도 그래서 많은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 리가 교과서적으로 매우 정상적으로 "이것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볼 일은 아니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과 업무수행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회에서 추천·동의·의 결·협의한다거나, 임명·지명은 방통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방송법」이 나「방통위 설치법」이 아닌 한, 시행령이나 고시, 정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방송 통신위원회 상임위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임위원단의 관행과 불문율은 협의입니 다. 다양한 상임위원들과 사전협의하고 어떤 것은 합의해야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을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을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장도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리고 의결안건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위원장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권한을 보면 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미리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서 참고로 한 경우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이되,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해서 어떤 심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김재홍 상임위위

- 반드시 전체회의의 의결안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티타임, 간담회에서 상임위원 단에게 사전설명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최소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O 최성준 위원장

- 이번 경우 같으면 제가 3배수 추천해 온 것 중에 어느 한 분을 선정하고, 시간이 있었으면 티타임에서 "이분을 제가 이래 저래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절차를 가졌을 것이고, 꼭 그런 공식적인 티타임이 아니더라도 제 방에서라도 오시라고 해서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해외출장 중이어서 그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그것을 월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이전 토요일에 보도가 되기시작해서 사실상 월요일에 말씀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복수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그 결정권을 상임위원단에 미뤄 달라는 요청은 아니고, 관행과 불문율은 관행일 뿐입니다.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분은 부당하다",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설득이 가능해야 하고, 그것이 토론과 합의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전체회의 의결안 건으로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의 논의와 협의와 사전보고절차 없이, 그냥 정관에 기반해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관이 어떤 정관인데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한 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나서 그다음 안건으로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선 이 사안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이렇게 장시간 토론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기자회견도 하셔서 그래도 존중하는 뜻에서 이렇게 진 행하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며,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의견차이가 있다면 위원장님 모시고 다 섯 분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토론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KOBACO는 주주가 따로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 관장을 1년 6개월을 해 본 저로서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것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수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KOBACO의 사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달라야 하는지, 저는 우선 그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KCA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을 위탁받아서 舊 방통위부터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KCA 원장 임명할 때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지 않고 방통위가 이 사업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 을 내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사안 상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 겠으나 계속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말씀으로 나간다면 일단 공개적인 안건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1시간 넘게 이 부분에 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따로 기회를 잡아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관해서 지금 의견진술인도 기다리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것을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20-09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5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 영만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2015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건의 제안이유는 2015년 12월 31일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비수도권을 방송구 역으로 하는 7개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허가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상파DMB 방송국으로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KBS지역지상파DMB 방송국, 부산MBC지상 파DMB 방송국, 대전MBC지상파DMB 방송국, 광주MBC지상파DMB 방송국, 춘천MBC지상 파DMB 방송국, 제주MBC지상파DMB 방송국, 그리고 TJB지상파DMB 방송국을 재허가 대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방향은 재허가 기간에 대한 방송사업 실적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시 청자 의견청취,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점검, 대표자·최대주주 대상 의견청취를 실시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심사대 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 은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항목을 결정하는데 총점은 1,000 점 만점으로 하며, 감점 등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안)>은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 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 허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에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 하고 $7월 \sim 10월$ 사이에 신청서를 검토하며, 시청자 의견접수 및 현장점검을 하고, $11월 \sim 12$ 월 사이에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허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확인하면 이것은 작년 12월에 지상파DMB 다른 방송국들 재허가할 때의 그 기본계획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동일합니다. 대상사업자만 다를 뿐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O 고삼석 상임위원

- 팀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상파DMB 재허가 심사를 의결할 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한 것으로 아는데, "지상파DMB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자"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성욱 지역방송팀장

- 2014년 재허가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2015년도 올해 지상파DMB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곧 착수해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중간에 내용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구기관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 김성욱 지역방송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20-091\sim10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서면으로 된 것으로 보고할 예정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러겠습니다.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으로, 작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사건의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통보해 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링크㈜ 등 4개의 통신사업자와 에스케이네트웍스㈜,

㈜디와이텔, ㈜트윈커뮤니케이션, ㈜지엘컴, ㈜케이워텔레콤 등 총 827개의 대리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현황 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 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입니다. SKT 등 4개의 통신사업자는 '96년 10 월~'14년 12월까지 외국인의 여권 등 외국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과 출국·사망 후 또 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 습니다. 세부적인 회선 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웍스 등 827개의 대리 점이 '96년 10월~'14년 12월까지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횟수는 총 127,199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 대구지검이 적발하여 기 조사완료한 대리점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명의도용 건수의 96.2%로서 5곳의 대리점이 주도적으로 명의도용한 사실을 확 인하였고,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 성 판단입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킨 대리점의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 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1호 위반에 해당되고, 사업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대리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겠습니다. 대리점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망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사업법 제52조 및 망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 금 부과, 그리고 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겠습니 다. 두 번째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입니다. SKT가 '10년 1월부터 '14년 8월까지 일시정지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5,346명 을 대상으로 총 868,247회에 걸쳐 임의로 부활충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 법성 판단입니다. 일시정지 중에 있는 선불 이동전화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2호와 제3 호, 그리고 망법 제2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사업법 제52조 및 망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사업법 제53조 및 망 법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각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입니다. SKT가 '13년 1월부터 '14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성명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수집·보 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외국인의 신분증에 가입신청서의 성명을 오려 붙인 다 음에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총 6,948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존재 하지 않는 외국인을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대리점의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 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3호 위반에 해당되고, 사업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 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따 라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의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되겠습니다. SKT는 '99년 9월부터 '14년 12월까지 대리점의 법인 명의로 총 343,967 회선을, 그 외에 삼성엔지니어링㈜ 등 7개 법인의 명의로 총 2,401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

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하였으며, KT 등 3개 통신사업자는 '08년 12월부터 '14년 12월까지 ㈜베스트윈 등 총 17개 법인 명의로 총 2,252회선을 이용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법인의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 나목 제3호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사업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실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까지만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검찰 수사 결과, 어디까지 기소를 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명의도용과 허무인에 관련된 부분은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리점의 사기행위로 판단해서 통신사업자에 대한 혐의는 없이, 다만 소위 말하는 부활충전에 대해 기소를 했고, 현재 검찰 구형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명확히 정리하면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대리점들이 각이 이동통신 본사를 상대로 해서 사기,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대리점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그밖에 다른 것이 기소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그 2가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워님 말씀하시지요.

O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 관련해서 1월 30일에 대구지법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목은 사기입니다만, 국장님께서 통신사 쪽에 기소나 유죄가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죄목은 사기입니다만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SK네트웍스도 SKT가 아니라 대리점입니다. 여기에서 통신사업자는 이통3사와 SK텔링크까지가 통신사업자로 되어 있고, SK넥트웍스는 대리점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의미에서 대리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검찰에서 공소 제기되어서, 지금 1심 판결이 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대리점들이 SK텔링크까지 포함하여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동통신3사와 SK텔링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속아서 가입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형법 및 특가법상의 판단과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는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대리점들이 SKT나 KT, LGU+, SK텔링크를 속여서 수수료와 카드의 할인율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심이 가는 정황은 혹시 없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구조상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 로든 통신사업자가 알고는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명확한 증거는 찾기 힘들지만 아마 그래서 검찰도 그렇게 기소한 것 같은데, 제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3사나 SK델링크가 그런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한 18년 가까이 이런 행위가 적지 않은 횟수, 건수에 이르기까지, 또 특정대리점을 예로 들면 한 5군데에 집중적으로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어떠한 형태든 이통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묵인 또는 방조, 조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조사결과 우리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는 것을 4가지 정도로 분류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박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 관련해서 저는 또 한 가지 측면을 더 이야기해 보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서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 그리고 허무인, 존재하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시킨 행위, 그리고 또 이용약관에서 정한 4개의 회선을 초과해서 선불폰을 가입시킨 행위,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에 5곳의 대리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 명의도용 건수 중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6% 이상을 차지하는 5개 대리점이 <가>, <나>, <다>, <라> 행위에 사실상 다 관계가 되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5개 대리점이 다 대구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SK네트웍스는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역적인 위치는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대구지검에서 수사는 시작했으나 수사의 지역적인 분포는 전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 이기주 상임위원

-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전국에 걸쳐 있는 똑같은 5개 대리점을 중심으로 4 가지의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은 단순히 개별 대리점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면 3페이지에 외국인 가입자 수 조사대상이 이렇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모든 이통사에 대해 선불폰, 후불폰에 외국인이 가입한 경우를 다 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외국인이 가입한 후불폰에 대해서는 이런 위법사항이 없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사실상 선불폰, 후불폰을 다 봤는데 이 안건에는 편의상 선불폰으로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후불폰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는데 대부분 선불폰입니다. 외국인이 가입한 선·후불폰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발단은 SKT에서 일어났지만 다른 이통사들에 대해서도 전수를 조사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O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위반한 건수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편차가 큽니다.

O 이기주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확인할 것이 없으시면 SK텔레콤㈜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인 입장해 주십시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입장)

SK텔레콤㈜의 임형도 CR부문 정책협력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진술해 주십시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임형도입니다. 먼저 선불폰 관련해서 이용자 이익저해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건 관련 선불폰 회선은 내부점검을 통해 이미 해지처리를 했고, 외국인 관련 가입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체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 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 편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앞둔 점을 고려해서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보다 상세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환경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입니다. 지금 피심인이 추가충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 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 드렸고, 앞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철 저한 보호를 할 것임에 대해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5월 22일 자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부활충전', 저희는 '추가충전'이라고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법률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미 서면의견서를 통해 말씀 드 렸듯이 본 건 추가충전은, 개인정보이용 행위 자체가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은 측면 이 있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 집·이용목적 등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이용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까지 별도의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 그동안의 업계와 전문가의 지배적인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심인 SK텔레콤 은 선불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전행위는 선불폰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수단방법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충전행위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이라 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다 만, 추가충전과 관련해서 계약기간 중에, 이용정지기간 중에 있는 선불폰에 무상으로 일정 한 선불요금을 추가적으로 충전하고 그에 따라 선불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인지 여부가 지금 법원에서 다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가 추가 충전을 대리점에게 요청해서 충전을 하는 경우와 본 건에서 피심인이 추가충전을 하는 경 우가 사업법적인 측면에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개인정보 이용 측면에서는 크게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의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선불폰이 충전 되면 이용자에게 선불폰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피심인이 추가충전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게 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추가충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 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충전은 계 약기간 내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기간을 추가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피심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용자들의 계약을 부활시킨다는 의미의 부활충전과는 무관합 니다. 제가 사실은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검찰에서 '부활충전' 이라는 용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나아가 피심인 은 추가충전을 실시할 때 이용자들에게 추가충전 사실을 SMS로 통지하는 등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 주었고, 이를 통해 일정한 비율의, 약 17.9% 정도의 이용자들이 추가충전 된 선불폰을 이용하고 재충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휴대폰이 꺼져 있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이런 추가충전 사실에 관한 SMS 통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는 추가충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SMS로 통지하고 그것을 받았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심인의 추가충전 행위와 관련해서 무리 한 법리 적용을 통해 지금 피심인을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기소했고, 지금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거쳐 5월 22일 곧 형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하였다고 말씀 드린 까닭은 검찰이 추가충전을 위한 개인정 보 이용을 위해서는 추가충전이라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 지의 형식적인 동의 문구 해석을 전제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 법률대리인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학계의 최고 전문가조차도 검찰의 정보통신망법과 관 련한 이러한 법리적용이 매우 무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금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피심인 대리인은 본 건 추가충전이 분명히 사업법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 비난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지 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주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 적용에 매우 무리하고 귀 위원회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중한 최종 결정을 요청 드리고자 합 니다. 참고로, 물론 이 사안의 메인 쟁점이 목적 외 이용이냐 하는 목적에 대한 해석 여부 와 관련되어 있는데 미국, EU 등 해외사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본 건과 같이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좁게 해석해서 규제기관이 규제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저희가 청취했었는데, 미국, EU 등의 선진 각국에서는 개인정보 목적 범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좁게 하면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독일이나 EU, 일본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목적 범위와 관련된 해석 논의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추가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기를, 지금 5월 22일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연기하여 주실 것에 대해, 서 면으로도 요청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 법률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5월 22일 판결 선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형사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지금 형사 판결과 관련된 법리 판단이 한 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시고 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내려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못 합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말씀 드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 피 형사재판은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죄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정책적인 고려나 전문적인 판단을 더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추가충전'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대로 저도 '추가충전'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추가충전한 것을 17.9%가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O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추가충전'이냐, '부활충전'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O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 최성준 위원장

-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위해 저쪽이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로 묻는다는 의미이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충전한 것을 17.9%가 실제로 이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런 자료를 내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추가충전한 이용자들 중에 자발적으로 재충전한 이용자들이 17.9%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검찰에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추가충전해 준 이용자들 중에 17.9%가 자발적으로 재충전했다는 것과 추가충전된 것을 17.9%가 이용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전자입니다. 추가충전한 이용자들 중에 재충전했다는 이용자의 비율이 17.9%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가충전한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서 또….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소진하고 다시 자발적으로 재충전….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지요. 추가충전한 금액을 소진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놔두고, 나중에 다시 또 재충 전하고자 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추가충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다 소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SK텔레콤이 그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충전이 일어난 부분은 데이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17.9%의 이용자들이 추가충전 받은 선불폰을 그 이후에 쓰도록 재충전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선 자료를 내주시고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면 추가충전된 부분, 표현을 그대로 땁니다 만 추가충전된 부분이 이용자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충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충전된 것을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저희가 검찰조사 이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해지조치한 부분에 대해 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 있으면 개통현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기간 이후에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가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추가충전된 것이 실제로 이용자에 의해 이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지금 자료 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하나도 모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하나도 모르지는 않고 일부 알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파악된다면, 과연 추가충전된 것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왜 파악해서 안 내시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가충전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됐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추가충전된 것이 이용자에 의해 많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충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실제로 이용이 됐고 재충전까지 이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해서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임의로 몰래 충전한 행위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SMS로 통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지금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SMS 통지를 휴대폰이 꺼져 있는 이용자들이 받지못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몰래 충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 망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추가충전 사실을 알려야 하느냐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라고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법리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사실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바로 확인은 안 됩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다투어 온 것인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그 것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SK텔레콤㈜의 사내변호사 김혜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자면, 검찰수사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충전해 드린 금액을 고객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저희도 궁금했고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데이터를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소진됐는 지 여부를 알려면 통화내역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통화내역은 아시다시피 통신비밀보

호법상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5년간에 걸쳐 일어난 내용을 다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생각한 것이 "그러면 고객이 그 금액을 실제로 다 사용했으면 다시 자기 돈으로 재충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까지 생각이 미친 것입니다. 재충전 이력은 일종의 매출자료로 5년 이상 보관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은 것이었습니다.

O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충전된 것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거의 자료가 없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율의 회선별 모든 데이터는 이미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17.9%에 관한 부분이요?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보기로 하고, 추가충전된 것이 사용된 것은 통신비밀보호 등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여기에 선불카드가 판매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추가충전이 되는 것인데, 카드 판매한 것이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나중에 정산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통화내역을 모르더라도….

○ 김혜영 SK텔레콤㈜ 변호사

- 카드 출고와 동시에 저희 매출로 잡히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 카드에 금액이 얼마나 소진됐는지는 저희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우선 그 부분은 정리하고,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 시지요.

O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아까 17.9%의 이용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이용자 모르게 충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일단 그 부분은….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자료는 아마 안 나올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준비한다고 며칠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쪽에서 그동안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준비 안했겠습니까? 그것을 추가로 제출한다, 할 수 없는 것을 제출한다, 이렇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이미 그것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O 이기주 상임위위

-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제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오늘 피심인 측에서는 주로 부활충전인지, 추가충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모든 이통사를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는데, 유독 SKT가 명의를 도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반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그것도 20년 가까이….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이후 내부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도 나름은 파악하고…, 자체 유통망 교육이 덜 됐고 선불가입자 관련 절차상에 있어서도 미흡한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보강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선불폰이 언제 도입됐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96년…, 정확한….

O 이기주 상임위원

- 모르긴 몰라도 다른 이통사들이 선불폰을 서비스하기 이전에 이미 SKT는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개 대리점에 집중해서 아주 장기간 동안 위반이 일어났는데, SKT 본사의 관련되는 부서에서 그런 이상 징후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확인을 못 합니까? 시스템이 됐든..., 아까 대리점 교육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잘 아시겠지만 선불폰은 먼저 돈을 내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용을 못 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기타 명의도용 이런 것들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간 동안 조금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기가 힘듭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SKT 본사에 전국의 대리점별로 담당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꼭 대리점 1개당 전담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그 당시에 담당한 팀이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선불폰, 또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선불폰 그리고 대포폰이 다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문제가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폰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쓰는 선불폰, 저는 이것이 가입자 관리나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과거의 방통위도 그렇고 지금 방통위도 그렇고 선불폰, 대포폰, 외국인 이용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면 SKT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본사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불폰 관련해서는 '11년, 그때부터 본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규모가 작은 상태여서 관심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담당 팀에서 다 처리되는 사안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게 관리하는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포폰을 말씀하셨는데 대포폰은 선불폰과 별개로 대포폰같은 경우에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네 번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회선을 초과해서 이동전화서 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이것이 유독 또 5개 대리점에서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거기는 선불폰 전문대리점입니다.

O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금 대포폰 문제와 선불폰 문제를 별개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 위법행위라고 사무처에서 판단한 그 부분이 대포폰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대포폰 자체는 지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면서 별도의 의도를 가지고 통신비밀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프로토콜을 가지고 관리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리고 대포폰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발각되면 저희가 요금을 감면해 주어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고, 대포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 해당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주로 말씀하신 부활충전인지 추가충전인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선불폰과 후불폰의 가입이 언제 시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두 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요금을 먼저 낸다는 것과 뒤에 낸다는 것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선불폰은 처음에 충전했을 때 가입하고 충전이 끝났을 때 가입이 해지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충전인지, 추가충전이 되면 다시 재가입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재가입이라는 표현보다도….

○ 이기주 상임위원

- 재가입인지, 가입기간을 연장한다든지….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부활충전의 경우에는 번호 유지기간이라고 해서 이용 가능한 기간에 자동으로도 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O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번호 유지기간을 넘어서서 했다면….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번호 유지기간이 넘으면 해지가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자체점검을 통해 다해지한 사항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선불폰과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이나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개인정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전혀 없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있으면 신용카드 가입이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카드회사에 다들어가 있고, 그러면 선불폰인 경우에 그 2가지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같은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SKT의 선불폰….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카드는 어떻게 보면 아무나 길거리에서, 파는 데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불폰의 경우에 2가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주든지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하고 일정 정도 등록이라는 가입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때 그 선불폰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든 현금으로 했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가입자 정보 내지는 개인정보 입력이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는 어찌 보면 구입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카드사의 금융 쪽과 통신 쪽은 개인정보보호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는 뭐라고 말씀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는 어떻게 보면 전화를 통해서든지 보다 손쉽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선불폰의 경우가 신용카드 가입한 것과 유사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교통카드보다는….

O 이기주 상임위원

- SKT에서 임의로 부활충전하는 것은 교통카드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입자가 요청도 하지 않고 충전을 스스로 한 것도 아닌데 왜 임의로 그것을 충전해 줍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불서비스에 비해 선불서비스는 마케팅 수단이 마땅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추가충전을 하는 방법을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무대리인에게 간단히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미국, EU 사례를 들면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있어서 목적의 범위를 한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더더군다나 EU보다 한국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규율들이 훨씬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유출사고 때문에라도 목적 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것은 미국이나 EU와 한국의 법제 자체에 차이가 있는 문제이지, 이 사건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목적의 범위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목적 외 이용이 명확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적으로 계속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정당하다, 그래서 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관련된 의견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 서비스가 추가충전, 그러니까 계약기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비난 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장하는 그런 목적의,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추가로 제공하는 정도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여러 가지서비스의 추가제공과 같은 맥락으로 실무에서는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부분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형사적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메시지는 잘 아시다시피, 증권통 사건에서도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나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번호가 개인정보이고 그것을 수집이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위반으로 처벌되고 나서, 2011년 중앙지법 판결이 나고나서부터 모든 기업들이 USIM 일련번호, 이런 식별번호, 사물통신에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기기식별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서비스의 제공 목적 또는 추가서비스 제공 목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

판장께도 설명 드리고 물론 사업법 위반이나 다른 것으로 제재 받는 것까지 저희가 법률의 견을 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목적 외 이용에서 목적의 해석과 관련된 기준이 수립되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휴대폰을 꺼놓고 있는 상태라서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불폰은 대부분 단기간 쓰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인은 한국에 잠시 다녀온 동안에 쓰려고 선불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한국에 와 있는 일주일 동안 나는 SKT의 이 선불폰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안별로 보면 분명히 선불폰에 이용자의 의사가 그런 식으로 추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선불폰 이용자들과 관련하여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충전된 금액이 다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180일 가까이, 10일은 수신가능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번호유지기간을 주는 것은 일종의 혜택을 주는 측면이 있고,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추가충전을 해서 다시 그 선불폰을 들고 다니라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낮아서, 후불폰을 가입 못 하는 사람들도 선불폰을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번호유지기간 내, 어떻게 보면 시계 등의 기능을 이용하려고 많이 들고는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에서 SMS 통지가 이루어진 것은 소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검찰은 몰래 보냈다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마무리하면, 저는 이동통신에 있어서 선불폰이라는 것이 아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 겠지만 무기명으로 자기 개인의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쓰는 교통카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쓰는 후불폰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가입과 해지 개념이 거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피심인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꾸 선불폰은 일반 이동통신 후불서비스 제공받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충전하는 그 자체도 맞춤형이다, 추가충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나름대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논리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선불폰을 도입할 때부터그런 콘셉트로 시작했는지가 궁금하긴 한데 답변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이용자의 서비스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해 줄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해도 당사자에게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라며 쫓아다니는 스토킹, 저는 휴대폰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

합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시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입니다. 사전 동의와 자기결정권입니다. 아까 EU나 다른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이용관리에 있어 사전동의와 자기결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통사가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스토킹이고,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명의도용은 SKT는 97,900여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관련 부분은 미미한데, 우리가 규정한 부활충전 행위는 155,300여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도용과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를 썼다는 부분은 검찰수사에서 기소되지 않고 대리점의 책임으로 된 것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것이 매우 안 좋은 위법·불법행위인데 다행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변호 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법정 판결이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만 따질 수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책당 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과 너무 갭이 크면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요. 그러나 정책당국은 법원과는 일정 부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통위가 이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라고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도 검찰에도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155,346명, 횟수로 따지면 868,000회, 이 15만명이 SKT의 시장점유율 50% 정도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 것입니까? SKT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한 2,3% 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아닙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더 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훨씬 덜 되는 숫자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도 안 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안 됩니다. 0점…, 계산해 보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법 위반의 범의(犯意), 법률위반의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SKT는 스스로 이런 허수들을 다 털어내서 시장점유율 50%에서 내려 왔습니다. 49.67%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50% 안팎만 해도, 49%만 해도, 시장점유율이 그 정도는 아주 높고 1위 사업자인데, 무리하게 50% 이상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의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아주 질이 안 좋다는 2가지의 혐의는 벗어났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사전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서비스인지…,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답변하시지요.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개인정보 쪽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케이스가 만약에 혜택을 마구잡이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측면 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이면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기 때문에 별도 동 의를 받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비유로, 재판 가서 협의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식사할 때 식당의 주인이 '아, 저기의 밥이 다 떨어졌네' 해서 알아 서 밥을 더 주는 행위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처벌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통신사업자의 추가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연장해 주는, 아니면 저 도 멜론서비스 이런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객 혜택 차원에서 조금 연장해 주는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개인정보의 마케팅 목적의 이용, 목적 외 이용으로 제재하기 시 작하면 시장 영업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오히려 이용자의 혜택에, 소비자의 효용에 역기 능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만약에 사업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저는 법 률적인 의견을 굳이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금석이 되 는, 리딩케이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목적 범위에 대한 부분을 좁게 해석하면 상당한, 아마 시장에서는 앞으로 또 법령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얼어붙을 수 있는 케이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음에 고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 우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비유하신 것대로 말씀을 드리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

는데 도중에 밥 한 그릇을 더 제공한 것이다", 아닙니다.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밥 내놓은 것입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 동안에 더 주려고 했으면 수신가능 기간 동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더 채워주고 "쓰십시오", 그런 것이 밥 더 주는 것이지, 밥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따라 와서 "밥 더 드세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금 이 사건을 선례다,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부활충전의 목적을 서비스 제공으로 안 보는 것입니다. 추가충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쓸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목적 외 이용의 범위가 좁아지느냐, 넓어지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한 용어도 부활충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그것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은 목적 외 이용이 목적의 해석이 아니고 사실인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궁금한 점을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는 밥 다 먹고 서비스 차원에서 밥 한 그릇 더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먹었는데 좀 더 먹으라고 한 숟가락 더 줬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의지에 반해서한다면 그것은 또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낸 자료를 보면, 동일가입자 기준 개인별 부활충전 횟수 현황입니다. 2010년 1월~2014년 7월까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밥을 10번, 11번, 12번씩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30회 충전도 2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선의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봐야 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 기간 동안 선정해서 계속 추가충전을 하다 보니 동일인에 대해 계속 할 수도 있었겠다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서 세세한…, 왜 이렇게 동일인에게 이렇게 많은 횟수의 충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지만, 장기간 동안 충전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해 할 수 있었겠다고 그냥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짐작만 하십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O 고삼석 상임위원

- 부활충전을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까? 공소장을 보면 SKT 본사 특수마케팅 사무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아닙니다. 그쪽에서….

O 고삼석 상임위원

- 기소 공소장은 무엇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데이터를 제공하면 대리점에 추가 대상….

○ 고삼석 상임위원

- 부활충전 대상을 선정해 주는 것은 본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특수마케팅팀에서 무작위로 해서….

O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상무님은 대리점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런데 전체 중에서 누구를 추가충전할 지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점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공소장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본사 특수마케팅팀에서 불러서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사실관계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수마케팅팀 직원의 무작위 정보가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상무님 이야기입니까, 변호사 이야기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어쨌든 특수마케팅팀이 관련된 것이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맞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충전과 부활충전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데 그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위원장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비유를 수정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약간 더 드리면, 계약기간 이 만약에 종료됐다면 개인정보를 내려서 다시 계약을 되살리는 행위는 부활충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번호만 유지되는 기간이지만 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계약유지기간의 종료가 임박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기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밥을 거의 다 먹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약이 아직 살아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추가충전이라는 용어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처음부터 회사 내에서 '추가충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부활충전'이라는 용어를 '추가충전'으로 통일해서 쓰는 것입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것은 이번 검찰조사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인지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 하면서 저희가 그때 다시 이런 식으로….

O 고삼석 상임위원

- 검찰에 대응하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O 고삼석 상임위원

- 실제 내부적으로 '부활충전'이라는 용어, '부활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정책서에 사용한 적이

있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 전에 말씀이십니까?
- O 고삼석 상임위원
-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부활충전하는 것은….
- 고삼석 상임위원
- '부활인센티브'라는 용어를 쓴 적은 있습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것은 확인해 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용어를 언제 어떻게 썼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 O 고삼석 상임위원
-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을 안 하려고 합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합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제가 모를 수도 있고 확인해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만 정리합시다. 특수마케팅팀에서 무작위가 됐건 지적을 했건 그것을 떠나서 선불카드 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선불카드 왜 내려 줍니까? 선불카드를 무엇에 쓰라고 내려 줍니까?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일단 추가충전과 관련된….

○ 최성준 위원장

- 그때 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쓰라고 내려줄 때 그 용어를 뭐라고 썼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확인이 아니고, 그것은 조사 나갔던 조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 황선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

- PPS(Prepaid Service) 충전 활성화 정책에는 'PPS 충전 활성화 및 부활인센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 내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그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의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의 목적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에서도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비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모든 기업의 활동이 시장점유율 유지라든지 어떤 확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목적으로 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기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의 동기이거나 목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안이냐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제가 법리적으로 구분해서 판단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다른 측면의 규율이 있어야하는 사안이었지, 이렇게 검찰에서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할 사안이었는지가 저희 대리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선불폰을 부활충전하는 그 목적 중에는 가입자 수를 유지하고 싶은 부분도 들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 유지를 하는데 사용될 목적으로 계속 보유되고 이용되는 것을 원할까요?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법한 것이냐,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피심인 입장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목적이 지금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여러 정황, 예를 들면 선불카드를 내려 보내 준 다, 그다음에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한다, 최대 30번까지 계속 부활된 사람도 있다, 저희가 한두 번 정도의 서비스 제공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기에 보면 6회 이상부터 30회까지가 1,000명대 단위로 나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결 국에는, 또 하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진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수신가능 기간은 다 파악이 되는데 수신가능 기간에 추가충전해 주고 문자를 보내서 본인으로 하여금 쓰도록 해 주는 것이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수신가능 기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가서 충전해 준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보 기에는 이 추가충전의 목적은 결국에는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 제공이 아닌 것입니다. 가입자 수가 유지되는 것과 서비스 제공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선례가 된 다", 앞으로 이런 선례, 안 생길 것입니다.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것에는 "유통망 교육이 잘못됐다", 그것은 곤란하지요. 유통망에게 선불카드 내려 주 고 충전하라고 하면서 거기 교육이 잘못됐다고 그쪽에 책임을 미루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인심이 후하시면 선불폰 말고 후불폰도 3,000원씩, 1 만원씩 더 쓰게 해 주시지 그것은 하나도 안 하시고 유독 외국인, 연락도 안 되고 출국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 것만 골라서 그렇게 1만원짜리씩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보면 저희는 목적 외 이용을,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O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답변하시지요.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목적 외 이용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SKT 시장점유율 변화'입니다. 2013년 9월~2014년 7월까지입니다. 점유율이 50%를 상회했던 2013년 9월에 50.1%이고, 2013년 10월이 딱 50.05%입니다. 이때 부활충전은 한 4만 건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갑자기 건수가 늘어납니다. 2013년 12월에 58,000건, 2014년 1월 63,900건 이때 점유율이 49.89%, 49.96%로 나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2014년 3월에는 시장점유율이 50.29%인데 이때가 75,000건 정도 됩니다. 2014년부터는 10만건을 상회합니다. 2014년 4월에는 점유율이 49.97%인데 이때 부활충전이 175,000건입니다. 2014년 6월에는 49.97%로 똑같은데 이때도 131,000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2014년 7월에는 SKT 시장점유율이 49.9%인데 이때 부활충전 건수는 171,000건입니다. 시장점유율의 변동과 부활충전 회선수의 규모는 일정하게 비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충전을 했던 그 이유라는 것은 마케팅 차원이다, 이용자에 대한 추가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연히 마케팅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추가충전이 마켓셰어(market share)나 가입자 수 유지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검찰조사 이전에는 저희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 쪽에서는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해지조치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했다면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가충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지한 이후로는 바로 해지조치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확인할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로 부활충 전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 쭉 논의를 했는데, 그것 말고 저희 안 건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불러드리지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서 이용계약 을 체결한 행위,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특별하게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 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이것은 일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2010년 1월~2012년 12월 29일까지는 수집이용 목적에 서비스 제공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그 부분은 사실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 건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련 수집이용 조항이 다 형사처벌 조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벌, 그리고 지금 관련자의 처벌까지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서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저희 주장들에 대해한 번 더 고려해 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임형도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선불폰 관련해서는 기존에 장기적으로 조금씩 발생한 사안이어서 내부적으로 선불폰 특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지한 이후에는 내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여러 차례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저희가 이것을 활용 내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 번만 더 검토,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퇴장)

회의를 시작한지 지금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 안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잠깐 상의도 할 겸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정회】

○ 최성준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오늘 절차에 관해 상의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범위 이외의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것이 없어서 오늘 시정조치까지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의 첫 번째는 시정명령입니다. 4개 통신사업자의 위 법행위를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과 시정명령 이행계 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가 되겠 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먼저 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 과징금으로 하되, 과징금의 상한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을 정하고,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치도록 하되,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망법 관련된 과징금입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 과징 금으로 하되, 과징금 상한액은 3억 6,000만원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 본과징금을 정하되, 의무적 조정과 임의적 조정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부과방안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서 SKT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반건수가 전체 위반건수의 94.5%를 점유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은 8억원, 그다음에 KT와 SK텔링크는 기준금액을 각각 5,000 만원, LGU+는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하되, 4개 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이 각각 12월을 초과하므로 각각 30%를 필수적 가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각 20%를 추가적으로 감경하여 SKT는 8억원, KT와 SK텔링크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LGU+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므로 10%를 감경하여 936만원의 과 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 화를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에 대하여 먼저 사업법의 과징금은,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SKT의 위반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기준금액을 8억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 기 간이 12월을 초과하므로 30%를 필수적 가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를 추가 적 감경하여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망법의 과징금입니다. 망법 제64 조의3 규정에 따라 SKT의 위반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기본과징금을 3억 6,000만원으 로 정하고, 의무적 가중과 감경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3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초기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령과 고시에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외

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SKT의 위반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기준금액을 8억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 기 간이 12월을 초과하므로 30%를 필수적 가중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를 추가 적 감경하여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 하여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에 대해 사업법에 따라 SKT의 위반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반건수가 전체 위반건수의 99.4%를 점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 금액을 8억원으로 정하고, 위반행위 기간이 12월을 초과하므로 30% 필수적 가중하고 조사 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를 추가적 감경하여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 만, KT, LGU+ 및 SK텔링크의 경우에는 자체 내부 기준이 미비하여 적발된 경우로써 고의 성이 없고 위반행위의 건수가 경미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방안입니다. 망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 모두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각 적용하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인 정되므로 각각 50%를 가중하여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참고 1>과 <참고 2> 및 <참고 3>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 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 고삼석 상임위원

- 14페이지,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14페이지 가기 전에 혹시 저런 문제는 없습니까? 대리점 5개가 있는데 이 대리점 5개가 <가>의 행위에도 해당하고 <나>, <라>에도 다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은 첫 번째 <가>의 명의도용에….

○ 최성준 위원장

- 명의도용만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망법상에….

O 최성준 위원장

- 대리점에 대해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가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인정보 파기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은 과태료가 없습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없습니다.

O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행위를 한 대리점은 <나>, <다>, <라>에 대해서는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단말기유통법과는 달리 사업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말씀하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4페이지에, 위반행위별로 먼저 간단히 보고 드리면 명의도용과 관련해서는 총 과징금이 9억 1,336만원, 과태료 5개 대리점에 대해 7,500만원, 부활충전과 관련해서는 SKT의 사업법, 망법 2개 합쳐서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무인 개통과 관련해서는 SKT가 8억원, 법인다회선 관련해서 SKT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3> 통신사업자 및 대리점별로 보시면 SKT는 총 35억 6,000만원, KT는 5,200만원, LGU+는 936만원, SK텔링크는 5,200만원, 나머지 5개 대리점은 과태료만 각각 1,5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선불폰과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정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보고받은 시정조치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의견은 없고, 단지 미래부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시행령과 고시가 안 맞는 것을 정비한다는 것 말고 미래부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미래부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에 있는 외국인 관련 등록정보, 출입국 정보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계속 개선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KAIT를 통해 이통사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서 명의도용 관련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미래부와 선불폰 관련된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입할 때 외국인 명의도용이나 허무인, 외국인 명의로 가입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DB과 연동시켜서 가입 당시에 확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O 엄 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SKT 등 4개 통신사업자와 SK네트웍스 등 5대 대리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SKT에 대해서는 35억 6,000만원, KT에 대해서는 5,200만원, LGU+에 대해서는 936만원, SK델링크에 대해서는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5-20-101)

O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 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 등 주요 과제를 이행하는 것과 최근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등을 반영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 중에서는 지난 1월 9일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늘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만 지난 1월에 보고 드린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를 통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제4조제10항과 제8조제1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규개위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에 관련된 조항을 아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문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밖에 추가 수정사항입니다.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3조제2항의 당초의 개정안을 아래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즉시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며, 6월 중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마련한「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보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호조치 제도를 개정하여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대신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온 정보보호, 자기결정권은 문제가 없습니까? 기업의 자율성 쪽에 무게를 두어서 규제완화, 규제개혁처럼 해나가도 괜찮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되, 고시에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이 현재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에서 최소한의 기준 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원칙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희의 기준만 지키면 면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해 주되, 나머지 실제로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스스로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디지털 기술변화나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이 아니라 그 대신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자율성을 주되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입 니다. 이것을 보면, 까딱하면 오해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것처럼 오해하겠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기업의 일종의 무한책임이다, 그런 것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O 김재홍 상임위원

-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지만 법적인 상관관계, 인과책임이 안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조건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 다.

라.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 (2015-20-10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 익 이용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에 따라 「2015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평가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대상 사업자는 '14년 말 기준누적 가입자 규모가 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많은 이동전화 3개사, 알뜰폰 5개사, 인터넷전화 3개사 및 초고속인터넷 9개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다만 일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4개의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평가를하고자 합니다. 평가기준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개 분야에 대해 8개 항목으로

구성하되, 세부적인 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 5단계 등급으로 공개하고, 평가결과 '매우우수등급'을 획득한 최고 득점 1개 사업자에 대하여 위원장님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매우우수등급'은 30% 이내에서, '우수등급'은 10% 이내에서 감경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조만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11월경에 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 및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계획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년 해 오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인센티브는 상향을 했지만 '이내'이니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 2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건 <나>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향후 계획이 뭐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다들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다 끝나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SKT를 비롯한 선불폰과 관련해서 조사한 것은 제가 보기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 약관 위배 여부, 또 망법상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여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인데 이용자정책국 2개 과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얻은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 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는 중기적인 것이고 하나는 장기적인 것입니다. 중 기적인 것은 오늘 보니까 '선불폰'이라고 다들 취약한 서비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조 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는데, 과연 전기통신서비스 중에 또 이런 전통적인 서 비스에 비하면 최신 서비스지만 혹시 우리 방통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한 2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이 제조업체에서 임베디드(embedded)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통사에서 설치하 는 경우가 있고, 가입자가 스스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제조업체일 경우라도 부가통신서비스에 최소한 해당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통사가 하는 것은 기간통신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독립 앱이나 제조업체가 설치한 것이 경우 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가입관계, 이용해지 관 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 내지 이용동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치정보 서비스입니다. 위치기반 서비스의 경우가 또 부가통 신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생각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많이 이용은 되면서 도 혹시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제도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범위 안에서 주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용자들의 이익이 저해된다든지, 개인정보 가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그런 쪽에 대한 점검, 조사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장기적인 것인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있는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별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용자보호국에서 자료를 줘서 보니까 2004년에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개편되면서 사실상 제 정을 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개정은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개정이었던 것이고, 특히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유형과 기준은 약간의 문구 정리 정 도 외에는 그냥 그대로 10년 이상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불폰이다, 다양한 앱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다 이렇게 시장이 달라지고, 기술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또 이용 자들의 이용행태가 달라짐에 따라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 다. 그런데 전문가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 드린 그 유형 및 기준이 예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 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행정관청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측가능성도 높이고, 객관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서비스, 기술변화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내지는 모디파이(modify)가 되어야 하지 않 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불폰 관련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연구과제를 한 번 주어서, 그리고 또 이용자정책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조사 한 사건들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 내지는 인 사이트(Insight)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현행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내 용을 한 번 보면…, 물론 법률적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며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 든 패스트무빙(Fast-moving)하는 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서 2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제안해 주셨고, 아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지시를 해서 앱과 관련해서 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이미 조사도 하는 등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모두에 있었던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 토론을,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진행시키기 위해 자제, 중단했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말씀 드립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미디어재단이 우리가 산하기구로 감독하고 있는 영리법인기업인 KOBACO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재단은 분명히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국민, 시청자를 직접 상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KCA 같은 것,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산하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연구용역을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디어재단은 법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결론을 말씀 못 드렸는데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기조실장님!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닌데, 보니까 기조실장 위임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기조실장 위임 전결사항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식 의결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론 삼아서 말씀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면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한다든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선의에 따라서 하든지, 안 하든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실정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제1기, 제2기, 또 제3기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모든 관행과 불문율, 합의제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실정법으로 입법해야 합니다. 다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미디어재단에 관련된 법령은 다 관행에 맡기지 않고 입법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어차피 공공기관으로 가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성이 있지만 그런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처음 설립이 되면서 설립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가 방송법 부칙에 따라 역할을 해 왔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어서 그것이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 산하기구이고 피감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받도록 해서 기재부 통제 아래에 둘필요가 있습니까?

○ 최성준 위위장

-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 산하기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O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 규정에 따라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정관을 작성했는데, 가능하면 다른 공공 기관과 똑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고 기재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방통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우리의 업무 관련 기관으로 최대한 보호한다고 할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방통위 업무, 미디어 재단의 미디어 디지털 교육, 시민운동, 시민단체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똑같이 한다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짧게 두가지만 말씀 드리면 첫 번째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1기 방통위 때 방통위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업무를, 지금 사실상 이쪽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와 있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똑같은 기관에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아까 공공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면서정부의 출연을 받는 기관은 거의 100% 공공기관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를 들면 문화부, 문체부 산하에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아리랑TV도 있고, KTV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이 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산하에 기관도 별로 없는데 가능하면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우리의 관할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재단 허가는 기조실장 위임 전결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것은 방통위 절차에 의해 서….

○ 최성준 위원장

- 그 재단 인가라는 것이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요식행위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허가를 줄지 말지를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법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심의하고 의결할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단 허가 거부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가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번 인사절차에 대해 기왕의 일로 돌리시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립 과정과 인선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추천 의결된 방통위 상임위원도,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주게 되어 있는 청와대 대통령이 거기에서 다시 또 스크린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류시킨 예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단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고 우리가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 최성준 위원장

- 형식적인 요건을 결여했는지를 따져 본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따져 봐야지요. 최소한 상임위원들이 그 재단의 설립과 인선, 재단 등록에 대해 아무 논의, 심의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형식적인 요건 결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법에 위반되는 것 말고 그동안의 설립 추진 과정과 인선 과정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전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전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임전결 사항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어떻게 사무처 위임전 결로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절차라 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차단당한 채 이사장 선임하고….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 하시면 의견을 말씀하실 자리는 만들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일단 위임전결을 철회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임전결은 우리가 철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무처 위임전결로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비영리재단 법인 설립인가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허가하는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KCA에서 맡아오던 일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접수가 될 텐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 김재홍 상임위원

- 똑같은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만 논의했지,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O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오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설립 추진 과정과 인선 과정에 대해 일단 상임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이 위임전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의결된 것도 청와대에서 다시 재스크린해서, 임명장을 형식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주고 안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무리형식적으로 어쩐다고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논의하는 의결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O 최성준 위원장

- 형식적인 하자가 발견이 되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그 부분에 관해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김재홍 상임위위

- 그러면 재단 허가를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지요? 방통위가 하게 되어 있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방송법 부칙에 위원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위원장이 인가하는 것을 기조실장이 위임전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O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의결사항 아니면 보고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법에 위원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방송법에요?

○ 최성준 위원장

- 방송법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여러 가지 법률 미비사항인데 일단 전체회의에 최소한 보고사항으로라도 해서 논의를 한 번 하고 지나가야지, 상임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는 없지요.

O 최성준 위원장

- 지금까지 모르신다는 것이 무엇을 모르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O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 다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전설명 한 번도 없었고요.

O 최성준 위원장

- 정관 설명을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인선에 관해서 지금 설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재홍 상임위원

- 정관 설명,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관행과 불문율에 따른 설명과 이해였는데 그것이 갭이 많았고, 모든 것을 실정법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재단 허가입니다. 재단 허가를 상임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게….

O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O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O 이기주 상임위원

- 하여튼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는 일은 진행하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필요한 것은 그것대로 병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된 경과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앞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업무를 어떤 계획 하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폐회 】